

예 산 총 칙

2010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20,302,172	3,609,065
일반회계	113,557,212	3,406,716
특별회계	6,744,960	202,349
기타특별회계	6,744,960	202,349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301,285	9,039
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777,048	23,311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32,603	3,978
주차장특별회계	5,221,634	156,649
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	18,390	552
기반시설특별회계	294,000	8,82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,113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